

가상융합산업진흥법에 따른 '임시기준' 설명자료

(NIPA 메타버스전략팀)

- ◇ 임시기준은 ▶ 과기정통부에서 주무부처에 임시기준의 마련을 요구하는 제도로 ▶ 가이드라인, 민원안내서, 개발안내서, 유권해석·적극해석, 행정규칙 등의 형식을 띄며 ▶ 임시기준 마련·공고는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

□ 임시기준 도입 배경

-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*를 도입하고 신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
 - * 규제 샌드박스,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,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등
- ①규제 샌드박스는 ‘엄격한 요건과 개별적 지정’, ②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‘법체계와의 정합성’, ③규제혁신 로드맵은 ‘장기간 소요’라는 한계에 봉착
 - ⇒ 가상융합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개선 제도 필요

□ 임시기준 필요성

- **(문제점)** 공통된 해석·기술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개별 사업자가 가이드라인 등의 마련을 주무부처에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, 주무부처 역시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
- **(필요성)** 임시기준 제도는 가상융합산업 발전을 위해 공통된 해석·기술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업자들의 의견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필요성을 1차로 검토한 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주무부처에 임시기준의 마련을 요구하는 제도
 - ☞ 과기정통부가 공식 절차를 통해 주무부처에 임시기준의 마련을 요청하므로, 개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것에 비해 실효성이 있음



□ 임시기준의 정의 및 유형

- **(정의)**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출시·판매나 이용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그에 관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을 위하여 임시로 마련한 기준(제2조제5호)
- **(유형)** 임시기준의 형태는 ▲가이드라인^①, ▲인허가 민원안내서^②, ▲개발안내서^③, ▲유권해석·적극해석 등 다양하며, 형태를 한정하지 않음
 - ☞ 주무부처의 판단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법령 정비에 바로 착수할 수도 있음(법령 정비의 動因으로서 역할)

□ 임시기준 마련 절차

- **(개시)** 과기정통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 등의 제안
- **(사전검토)** 과기정통부장관이 임시기준 마련 필요성을 1차로 검토한 다음,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
- **(임시기준 마련)**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시기준안 마련
- **(심의·의결)** 임시기준안을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 후 확정
- **(공고)*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공고

【임시기준 마련 절차】

개시	접수	사전 검토	임시기준 마련	심의·의결/공고
과기부장관 직권	⇒	① 건의 내용 확인 ② 필요성 검토 ③ 주무부처 협의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신청인에게 검토결과 통보	주무부처에서 임시기준(안) 마련	위원회 심의·의결, 주무부처 공고
개인, 기업, 협회 등 제안	과기정통부 또는 수탁기관			

- 법 제28조(임시기준 등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직권으로 또는 가상융합사업자, 협회 등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**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**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시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.
- ②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**임시기준 신청서에 임시기준의 내용, 필요성, 이용자 보호방안 등에 관한 서류**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임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 다만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.
-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**임시기준의 유효기간, 적용범위** 등을 정할 수 있다.
-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임시기준을 전략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임시기준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**임시기준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시험·검증 등 필요한 조치**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-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임시기준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임시기준의 마련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법 제29조(임시기준의 관리 등)**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른 임시기준 공고 후 이와 관련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의 제·개정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에 관련된 법령 등이 제·개정됨에 따라 임시기준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시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행 중 안전성이나 이용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중대한 위해 등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기준의 적용을 중지시키거나 임시기준을 취소할 수 있다.
-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임시기준의 시험·검증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

- 시행령 제14조(임시기준의 제안 등)**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.
-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기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)에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시행령 제15조(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.

1.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
2.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

시행령 제16조(임시기준의 마련 절차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, 관련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, 가상융합사업자, 관련 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시기준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.

시행규칙 제7조(임시기준 신청서)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의 마련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시기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(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
2.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
3. 임시기준의 필요성
4.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
5. 이용자 보호 방안
6.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(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임시기준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
신청인	회사명 또는 단체명	사업자(법인) 등록번호 <small>※사업자(법인)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</small>
	소재지 주소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
임시기준 제안 개요	명칭	
	주요내용	
	관련 법령	

「가상융합산업 진흥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임시기준의 마련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수탁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임시기준 제안서 1. 임시기준의 명칭 및 내용 2. 임시기준의 적용 범위 3. 임시기준의 필요성 4. 임시기준과 관련된 법령 5. 이용자 보호 방안 6. 임시기준 관련 해외 사례(해외 사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)
------	---

처리 절차

